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for Exploiting Public Information in Private Sector

이 재 진(Jae-Jin Lee)*
김 우 식(Woo-Sik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1 민간이양 |
| 2. 공공정보의 개요 | 4. 2 민간위탁 |
| 2. 1 공공정보의 개념 및 범위 | 4. 3 기타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 정책 수립 |
| 2. 2 공공정보의 활용 의의 | 5.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효과 |
| 2. 3 공공정보의 유통 체계 | 5. 1 정부 측면 |
| 3. 국내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현황 | 5. 2 민간사업자 측면 |
| 3. 1 해외 현황 | 5. 3 이용자 측면 |
| 3. 2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6. 결 론 |
| 4.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 | |

초 록

정보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정보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의 개발과 확보는 정보산업의 발전과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때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자원은 국가적인 정보자원의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공공정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거시적으로 정보산업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은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부가가치화와 상업화를 통해 최종 이용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회 창출과 이를 통한 산업 육성, 그리고 공공·민간 부문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ABSTRACTS

As recently the information industry has been emphasized as a national basic industry, it is the key for the growth and success of information industry to maintain information resources of high quality. In this context, exploiting public sector-held information could be not only the basic work for keeping information resources but also the motive of development in future information industry.

To cope with these trends, this study suggested policies for exploiting public information in private sector. This is the process that offering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to the private business sector, making value addi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information, and servicing to end-users. This enables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industry and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service through share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대리

접수일자 1999년 5월 17일

1. 서론

전세계적으로 정보산업의 비중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물리적인 기술부문에 서 점차 정보자원이거나 정보내용물을 나타내는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던 정보사회가 고도의 지식사회로 바뀌면서 지식기반으로서 정보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산업 발전과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정보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은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이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자원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민간에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보보다 객관적인 신뢰성이나 정보수집의 지속성이 우수하며, 공공정보에 대한 개발과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육성을 통해 다른 정보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정보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통한 정보의 활용·촉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행될 재화로써 가치를 갖는 각종 정보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됨과 동시에 미래 정보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은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부가가치화와 상업화를 통해 최종 이용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공공정보의 유통 합

리화, 다양한 사업 기회의 창출, 정보제공 채널의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공공정보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 및 국내의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을 위한 이양·위탁 방안과 기타 이를 뒷받침할 정부주도 정책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된 방안을 추진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부, 민간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조망해 보았다.

2. 공공정보의 개요

2.1 공공정보의 개념 및 범위

공공정보(公共情報)의 개념은 '공공'의 의미부여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즉 공공의 의미를 정보의 소유 주체를 강조하여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으로 보는 경우와 정보의 성격을 강조하여 공공을 '공익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때로는 두가지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4, 21). 따라서 공공정보는 협의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제한할 수도 있고, 광의로는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여 공익정보(公益情報)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공공'의 의미부여에 따른 협의의 공공정보

는 정부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의미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공문서, 국가간행물, 정부간행물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백서, 연감, 통계자료, 보고서, 업무자료, 홍보자료, 법령자료 등이 포함된다(정부간행물제작소 1998, 3). 이와는 달리 광의의 공공정보는 '공익성'을 띠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여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공익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공공정보의 개념은 협의의 공공정보인 행정정보에서 시작하여 광의의 공공정보로 설명된 공익정보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공공정보는 모호성을 배제하고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협의의 공공정보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2. 2 공공정보의 활용 의미

공공정보의 활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공공정보, 특히 행정정보는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제공함으로써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정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의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5개국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와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제도에 의한 정보공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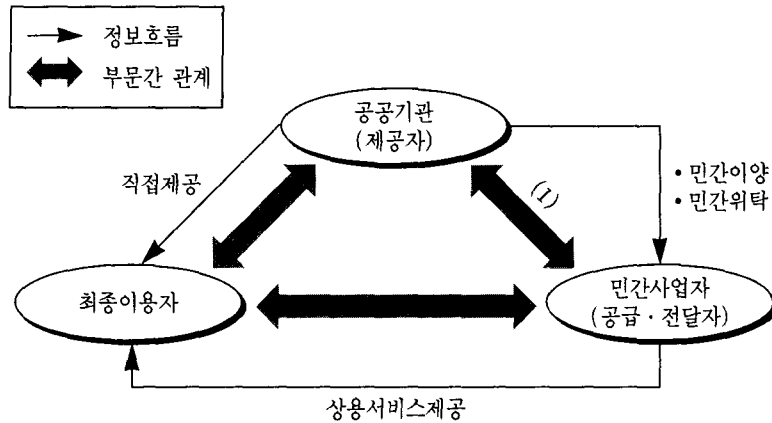
구가 발생되었을 때 이루어지므로 기관의 자발적인 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국정이나 행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 이해와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대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국민의 생활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활용은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관간 정보 교환과 정보 생산의 중복 업무 방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 결정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공정보의 활용은 공공기관,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보산업,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정보 콘텐츠의 양과 질이므로, 다수·양질의 정보 콘텐츠 개발과 확보에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정보가 다수의 이용자인 국민을 위한 정보이며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콘텐츠로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2. 3 공공정보의 유통 체계

공공정보의 활용은 전반적인 공공정보의 유통 체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정보의 흐름에 따른 유통 체계의 각 구성요소 부문의 개별적인 역할과 역할, 그리고 이들 부문간의



〈그림 1〉 공공정보의 흐름

관계가 공공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공정보의 유통 체계는 공공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 그리고 이 양 부문을 매개해 주는 공급·전달자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제공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공급하게 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을 가리키고, 공급·전달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최종 이용자인 일반 국민, 기타 이용자에게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서비스 생산·공급자로서 민간 사업자, 산업부문이 해당된다. 최종 이용자는 이러한 공공정보를 다양한 목적에 의해 직접 획득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모든 개인, 단체를 포괄한다. 공공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각 부문간 정보의 흐름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공정보의 유통 체계내에서 공공부문은 정보를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정보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산업부문에 제공한다. 후자의 관계는 〈그림 1〉의 (1) 부분으로 설명되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각종 공공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민간화(privatization)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며 사바스(E.S. Savas)는 이를 실용주의적 요인, 이념적 요인, 상업적 요인, 대중적 요인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Savas 1987, 4-10). 실용주의적 요인(pragmatic pressure)으로는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늘어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생산적인 측면에서 민간화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더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표방한다. 이념적 요인(ideological pressure)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면서 점차 비대해지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의 규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며 비대한 정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더 작은 정부(less government)를 추구한다. 상업적 요인(commercial pressure)으로는 공공부문의 지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국영 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나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인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기법이나 예산 운용이 보다 효율적인 민간부문에 보다 많은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더 많은 사업 기회 창출(more business)을 유도한다. 대중적 요인(populist pressure)으로는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의 실현을 위하여 큰 정부, 큰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적인 공동체와 국민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공통된 요구의 정의와 표출 권리,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함을 들고 있다.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 산업부문에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유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인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는 업무 능률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살릴 수 있고 나아가 민간 사업자의 경쟁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그리고 민간 사업자측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업·대중적 요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에는 크게 민간 이양과 민간 위탁의 정보제공 유형이 존재한다. 민간 이양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대가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이양이 가능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정보가 공적·사적 이익과 관계없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것이 될 수 있고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공과 가치의 부가가 자유롭게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 내용에는 정보를 제

공하는 정보서비스 역할 부분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위탁은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많은 업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되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지면서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민간이 수행토록하는 유형이다(박재희 1998, 49-50). 민간 위탁은 권한의 위임 방법과 위임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는 민간 위탁을 통해 수행되는 사례가 많다.

3. 국내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현황

3.1 해외 현황

3.1.1 유럽연합(EU)

EU는 유럽공동체내에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89년 EU의 EC(유럽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시장에서의 공공·민간부문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지침](Guidelines for improving the synerg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information market)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을 규정하여 유럽내 정보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공공정보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정보의 생산과 전자

정보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부문은 이들 정보의 부가가치를 통해 시장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EC LAB [1989]).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정보이용자가 적정한 비용에서 이용자의 지역적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품질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모두가 공공정보를 각자의 환경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다(PSI, London and CRID, Namur [1995a]).

1995년부터 EC에서 추진하고 있는 INFO2000 프로그램은 범유럽적인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정보의 이용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경제성장과 경쟁력, 고용창출, 개인적·전문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위해 전세계적인 경쟁력향상과 유럽의 정보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EC, Directorate General XIII/E). INFO2000 프로그램의 세가지 주요 행동지침 가운데 “유럽의 공공부문정보의 활용 (Exploiting Europe's publicsector information)”은 공공부문 정보의 접근과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유럽의 공공부문 정보의 디렉토리 연결, 공공부문에서의 콘텐츠 정보원의 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간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와 국가간 경험의 교환을 통한 녹색서(Green Paper)의 발간이나 공통 표준 포맷의 개발을 통한 디렉토리 생산과 연결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공공부문 정보 개발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접수된 141건 가운데

20건을 선정, 총 8.6MECU(약 9백 50만달러)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EU는 공공부문이 보유·소장하고 있는 풍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하여 민간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범유럽적인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한다.

3. 1. 2 영국

유럽내 개별 국가 가운데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 통상산업부는 1986년 DTI지침 (Government-Held Tradeable Information: Guidelin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in dealing with the private sector)을 발표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에 이양할 때 따라야 할 제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적 전자정보 이용을 통한 경제효율과 경쟁력을 증진시켜 영국의 정보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TI지침은 강제성을 띠거나 의무 조항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각 정부부처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 취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보가 많이 생산되고 쉽게 이용가능하게 될수록 상업적인 기획의 창출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Fisher 1998, 32)을 인식하고 있는 영국은 정부에서 생산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Crown Copyright)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보장하고 후속 이용을 통제하고 출판물의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정

보의 활성화 및 상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3. 1. 3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 주도하에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1994년 2월 14일에 발행한 총리의 통지문서(Circulaire)는 프랑스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에는 '공공데이터의 배포'라는 관점에서 배포의 일반적인 방법, 각종 경쟁 규칙의 준수, 적용 가능한 요금의 설정, 요금의 수용방법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다.(日本データベース振興センター-1997, 204) 이 통지문서는 프랑스가 공공정보의 이용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상업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PSI, London and CRID, Namur [1995b]). 또한 이미 1984년부터 국영 통신회사인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텔(MINITEL) 서비스를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 왔다. 미니텔은 전화 가입자에게 저가로 단말기를 보급하여 전화선 연결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단말기를 통해 각종 생활정보에서 전문지식, 공공서비스 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현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필수적인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하여 정보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산업 육성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이 동일한 시장에 공존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France, Premier-ministre 1998).

3. 1. 4 미국

미국은 1993년 클린턴 정부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국가정보기반)의 제창을 통해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부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기반 마련을 확고하게 이루었고 이를 통해 정보기술을 응용한 실제적인 공공정보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1966년에 제정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한 기관정보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공적 혹은 사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기관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특히 정부기관의 업무처리와 레코드 및 정보저장을 위해 컴퓨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때 사용되는 전자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 1996년에는 [전자정보자유법](E-FOIA)으로 개정하였다. [정보자유법]은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에 대한 사고와 실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관련된 정보수집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상의 문서업무를 줄여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효과적인 정보유통을 모색하는 [문서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 1995)과 이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고시한 예산관리청(OMB)의 통지문서 A-130(Circular No. A-130, 1996)은 정부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정부지침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이양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 위에서 공공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위해 정부인쇄국(GPO)이나 국립기술정보국(NTIS)의 역할이 크며, 특히 연방보존도서관 프로그램(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을 운영하여 전국 각지의 1,365개(1998년 현재) 지정 보존도서관에서 정부출판물을 비롯한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2 국내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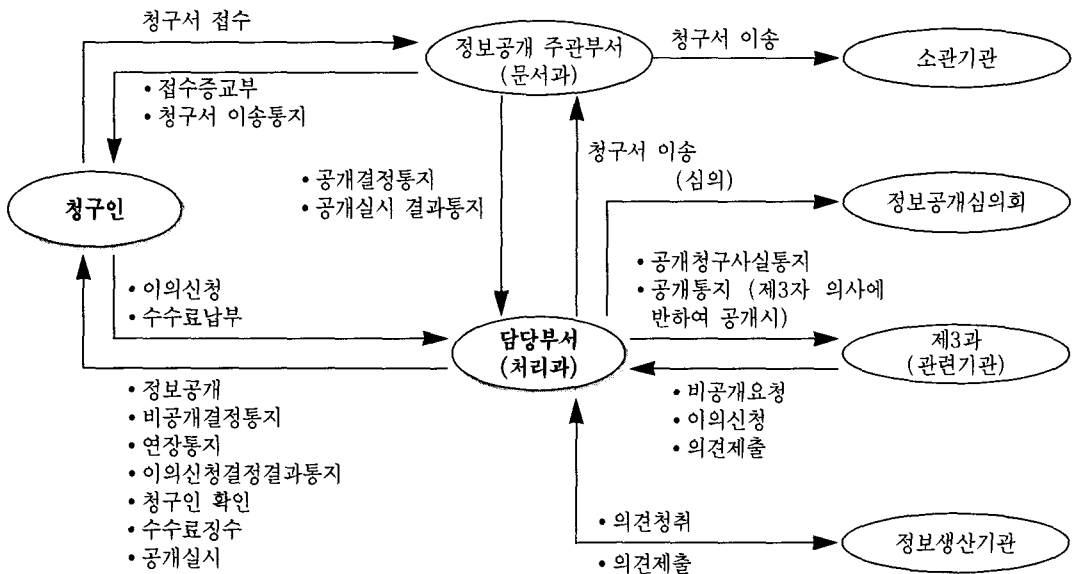
3. 2. 1 법제도적 환경

아직까지 국내에는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정

책·제도가 미흡하지만 국가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제도에서 유사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의 모법(母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서 국가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을 목표로 하여 2010년까지의 단계별 목표와 중·단기적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제공의 확대와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구 조항(제13조 1항)은 특히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정보활용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공공정보의 활용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제도의 하나로 정보공개제도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정



<그림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보공개에관한법률])은 1996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와 처리절차는 <그림 2>와 같이 ① 청구 및 접수, ② 공개여부 결정, 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그리고 ④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비공개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를 청구에 의한 수동적 자세로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정보공개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민의 요청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허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으며 유사개념으로 정보제공, 정보공표, 정보접근과 정보배포 등을 고려할 수 있다(이기식 1998, 235).

이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동활용제도는 1998년 3월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의 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여 민원사무와 기타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수행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치를 통해 행정기관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며 이와 연계하여 공동이용을 위한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정보공동활용은 기관간, 특히 행정부처내에서의 업무효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민간의 정보활용과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제도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전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기본 근거가 될 수 있을뿐 제도의 확대·개선이 불가피하다.

3. 2. 2 공공기관의 민간이용 가능 정보 현황
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는 현재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 - 국가정보자원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자/비전자 정보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자원을 조사·파악하여 민간 DB 사업자에 이양하여 상용 DB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은 보유 정보자원의 제공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간 DB 사업자는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공공정보 DB를 구축·유통함으로써 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일반국민에게는 다수·양질의 공공정보를 이용할수 있는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2). 이 사업은 2002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조사 대상을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정보 조사·목록화와 이를 통한 정보의 민간 제공·이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사업 수행의 1차년도인 1998년에 조사된 중앙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가운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공공정보의 현황은 <표 1>과 같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28).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중에

〈표 1〉 정부기관별 민간 활용 가능 정보 현황

기관명	자료규모	기관명	자료규모
문화관광부	4종	교육부	↓
노동부	10종	첨단학술정보센터	4종
보건복지부	16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종
환경부	11종	사학연금관리공단	3종
한국자원재생공사	2종	한국교육개발원	5종
환경관리공단	1종	기상청	58종
건설교통부	5종	관세청	2종
한국수자원공사	5종	식품의약품안전청	2종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
국립중앙과학관	4종	에너지관리공단	2종
통계청	25종	에너지경제연구원	2종
행정자치부	4종	대한상공회의소	1종
정보통신부	↓	중소기업청	2종
한국전산원	6종	특허청	6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종		
전자통신연구원	17종	계	225종

서도 출연연구원이 상당량의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공공정보가 특정 부문에만 편중되어 있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다량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1차년도 사업 수행 결과로서 각 정부부처와의 조사 체제 수립과 업무 협조 등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실제로 조사되지 않은 정보자원이 다수 있으리라 예측되며 조사가 16개 정부기관에 제한되어 이루어진 까닭에 이밖의 모든 정부기관을 포함할 경우 이용가능한 정보량은 문헌 조사에 의해 나타난 것보다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2. 3 문제점

국내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활용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이에 대

해 잘 모르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공기관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보공개를 꺼리는 등, 공개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소재와 내용 안내의 부재와 연관되어 공공정보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취약하다.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은 다양한 부가정보와 부가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자원의 제공자측과 이를 활용할 민간사업자간에 발생될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제도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표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민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셋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현재 기상, 통

계, 특허, 법률, 판례와 같은 분야의 정보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용 수요가 많아 이를 사업화한 예가 많지만 이외의 특화된 전문분야나 소수 이용자의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의 정보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장이 미약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화한 예를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이나 유통이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사적인 관계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암시적인 불공정 거래나 독점적인 정보 공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보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활용을 위해서는 성문화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되어 이용되는 공공정보의 내적 충실함이 부족하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가공이나 가치의 부가없이 원정보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최소한의 내용을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본래 정보의 가공이나 제공을 위한 서비스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의 가공과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연계로 해결될 수 있다.

4.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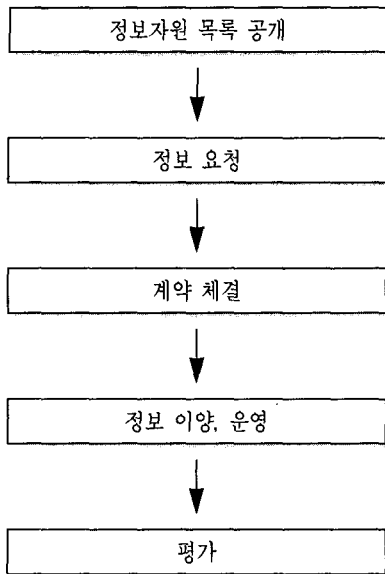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민간 제공 방식에 따라 민간 이양, 민간 위탁의 방법과 그 밖의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주도의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으로 제시할 수 있다.

4.1 민간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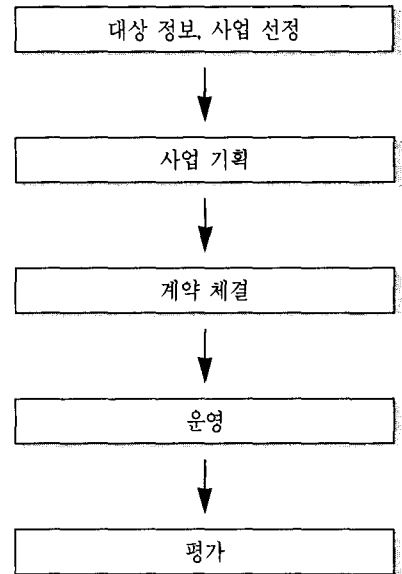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이양은 흔히 공공부문의 기능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능의 수행이 절실히 요구될 때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의 생산·공급과 최종적인 관리 책임,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일부 공공서비스에 적용되어 왔다(박재희 1998, 49). 특히 공공정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이를 서비스해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정보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부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기본 재화를 획득하여 서비스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편의성, 비용, 질적 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아무런 책



<그림 3> 공공정보의 민간 이양 추진 과정



<그림 4> 공공정보의 민간 위탁 추진 과정

임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정보의 현행 성과 이용 가치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하며 민간 사업자도 정보를 조건없이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로 일반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민간 이양 과정은 정보자원 목록 공개, 정보 요청, 계약 체결, 정보 이양·운영, 평가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4. 2 민간 위탁

공공정보의 민간 위탁은 민간 이양과는 달리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분기점에서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공익성은 높은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의 경우,

비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민간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수입이나 수익의 기대없이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민간 위탁은 공익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때 공공기관, 특히 정부기관은 정보 활용과 관련된 최종적인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게 되며, 민간 사업자는 사업 기획의 포착과 더불어 비용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정보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정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은 대상 정보와 사업의 선정, 사업 기획, 계약 체결, 운영,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공공정보의 민간 위탁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요인과 필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필

요한 것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게 될 기준이나 지침의 마련이다. 제공 및 이양 가능한 정보 목록을 민간에 공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요청이 미비한 경우 이는 수익성과 수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비록 수익성은 저조하더라도 충분한 공익성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평가 지침이나 기준을 통해 민간 위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 위탁의 경우도 민간 이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제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성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사후 평가와 사업 결과의 검토를 관련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4. 3 기타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수립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를 통한 사업기회의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주도 정책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이 빈틈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4. 3. 1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홍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정

보공개제도에 의한 정보 제공은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의 개인적인 필요와 확인 수준으로 제한되어 제공자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보의 공개청구는 일단 정보의 내용과 소재가 파악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정보의 내용과 소재에 대한 안내·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자측 모두의 적극적인 정보청구와 정보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공공정보의 공개는 대부분 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거시적으로 국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보존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자원의 제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3. 2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정보의 유통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자원을 전자 형태로 전환하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는 각종 정보통신기반의 확충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의 확대에 의해 모든 국민이 지역적인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를 민간에서 제공받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정보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4. 3. 3 공공정보의 유통체계 수립

양·질적으로 풍부한 공공정보의 개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어온 공공정보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기존의 편협된 사고와 공공부문의 정보제공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정보원 개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낙후되어 있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공자와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최종 이용자를 둘러싼 정보원의 개발 및 제공,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효율적인 유통체계의 마련이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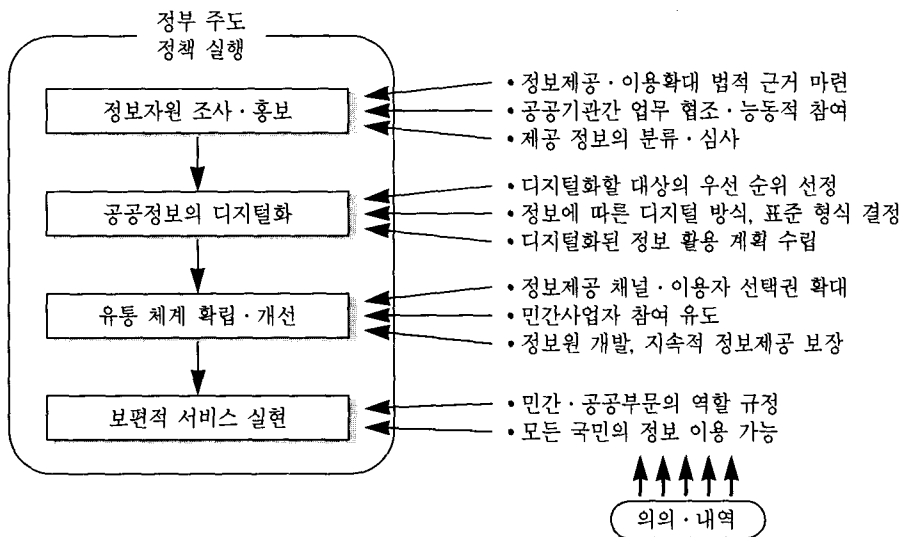
4. 3. 4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방침 마련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실시를 위해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설정 및 협력 등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적정한 비용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여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일선상에서 적절한 경쟁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그 한계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관계는 공공부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각 부문의 역할, 과정,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등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3. 5 정부주도 정책의 단계적 실행

이러한 정부주도 정책·제도는 공공정보의 유통 과정 및 절차적방법에 의해 <그림 5>와 같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림 5> 정부주도 정책의 단계적 실행

5.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효과

5. 1 정부 측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정부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서비스 개선은 국민을 위한 길이 되며 이는 사회의 원활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 측면에서 공공정보의 활용은 정보공동 활용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이룩하고 정보공개로 통해 국민의 권리 충족과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정보의 가치 창출로서 본원적 가치 창출이 촉발된다. 본원적 가치 창출이란 정보의 발생 및 공개에 제한되었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발굴을 통해 가치있는 정보를 다량 생산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창출된 공공정보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정보제공에 따른 정부기관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부문은 모든 일반 국민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공공정보의 부가가치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주력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5. 2 민간사업자 측면

정보의 가치 창출로서 파생적 가치 창출은

부가가치 창출과 부대적인 가치 창출로 나눌 수 있다. 이용자 지향적인 정보의 이용과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나아가 상업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정보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정보를 이양 혹은 위탁받아 이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에 따르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파생적 가치 창출의 하나인 부대적 가치로 창출된다. 이러한 부가서비스에는 정보이용과 이에 따른 업무 수행을 대리해 주는 대행서비스, 이용자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 정보의 분석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예측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3 이용자 측면

공공정보를 민간 사업자를 통해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용 요금의 부과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정보의 다양한 가치 창출 효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련된 정보제공 채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양 부문간의 채널 확대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내에서도 민간 사업자간의 경쟁적인 관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경우에서 이용자는 정보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질적 수준,

가격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6. 결론

양질의 정보자원 확보가 정보산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는 현재의 정보시장 추세에서 공공정보의 활용은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정보가 객관적인 신뢰성이나 수집의 지속성이 뛰어나며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이용자층의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의 활용이 다른 정보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정보를 제공하게 될 공공부문과 이용하게 될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두 부문간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인식에는 정보공개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포함되며 인식 확대를 통해 공공정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소재에 대한 홍보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은 정보의 제공과 이용 부분에서 요청되는데 이는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이 본래 정보서비스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한계에서 비롯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공공정보를 국민에 전달하는 정보제공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은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크게 민간 이양과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간 활용을 위해 단순히 공공정보를 민간에 제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정책·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의 조사·홍보,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공공정보의 유통체계 확립,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실시 등의 단계적인 정부주도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공공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이용자에게 제공할 민간 사업자는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발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의 이익이 우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정보산업의 변화 추세에 대처하고 거시적으로는 국가 정보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된 제반 여건의 조성 and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박재희. 1998.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방안』. 서울: 행정연구원.
- 서진완. 1997.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기식. 1998.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제도적 측면의 연구”. 『미래 전자정부 비전 정립 및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1998년도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1998년 10월 17일. 233-248, [서울: 호텔신라].
- 이재진, 안계성. 1998.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3회 과학기술 정보 워크샵: 사용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1998년 12월 10-11일, 163-177, [대전: 연구개발정보센터].
- 이창한. 1998. “민간에 의한 공공부문 정보자원 상업화 추구”.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64호 (9월): 27-37.
- 정부간행물제작소. 1998. 『정부간행물목록』. 서울: 정부간행물제작소.
- 조동성. 1993. “공익 DB의 효과적 개발과 민간업체의 제도적 참여 방안”. 『DB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993년 6월 23일, 27-41, [서울: KOEX].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1998년도 국가정보자원종합관리사업 추진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4. 『공공 DB의 효율적인 구축 및 서비스 운영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小林秀幸. 1997. “政府資料の基礎知識-身近な情報として活用するために”. 『情報の科學と技術』, 47(12): 639-644.
- 日本データベース振興センター. 1997. 『データベース白書』. 東京: 日本データベース振興センター.
- EC, Directorate General XIII/E. “INFO2000 : Introduction and documentation.” [online].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cited 1998.11.3]. (<http://www2.echo.lu/info2000/en/introduction.html>).
- EC LAB. [1989].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synerg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information market.” [online].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Legal Advisory Board. [cited 1998.11.5]. (<http://www2.echo.lu/legal/en/access/synergy.html>).
- Fisher, A. 1998. “Crown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age.” *Aslib Managing Information*, 5(5): 31-33.
- France. Premier-ministre. 1998. *The governmental action plan : Preparing France's entry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online]. [cited 1998.11.10]. (<http://www.premier-ministre>).

gouv.fr/ DOSACTU/txtang.doc).
PSI, London and CRID, Namur.
[1995a]. "Towards the idea of a
universal service." Chap. 3 In
PUBLAW 3 [online]. [cited
1998.11.7].
(<http://www2.echo.lu/legal/en/publaw/univers.html>).

_____. [1995b]. "France."
Chap. 2 In *PUBLAW 3*
[online]. [cited 1998.11.10].
(<http://www2.echo.lu/legal/en/publaw/france.html>).

Savas, E. S.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J:
Chatham House.